

300-6-141. 신문조서(許憲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1

■ 許憲 변호사의 1919년 制令7號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의 送致書와 피의자 신문조서 및 判決文 수록

- 許憲은 1885년 6월 11일 咸北 明川郡에서 許柚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齊洞小學校를 卒業하고 漢城中學을 中退한 후 京城 獨逸학교에서 修學하고, 京城 普成專門學校를 卒業하였다. 190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에 合格하고 1906년 7월 明治大學 法科를 卒業한 후 귀국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며, 普成전문학교장, 新幹會 會長, 東亞日報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 許憲은 한일합병에 불만을 품고 독립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社會主義와 民族主義의 對立으로 思想이 混沌해지자, 1926년 5월 10일부터 1927년 6월 12일까지 世界를 巡訪하였다. 하와이에서 李承晚系의 同志會派 및 朴容萬派, 美國各地에서 安昌浩係 興土團派를 만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弱小民族世界大會에 참가한 후, 모스크바에서 구바린과 會見하였다. 英國 등지에 亡命中인 조선독립운동자의 熱烈한 태도에 자극되어, 조선문화 向上을 위하여는 조선독립의 실천운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1929년 光州學生事件을 지지하였고, 1936년 11월경 長女 許貞淑과 婿 崔昌益 등이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中國에 潛入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思想事件者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조선독립을 선동한 不穩인동을 하였다.
- 前 東亞日報 記者로 미국 콜롬비아大學 政治經濟科 出身의 知人 洪翼範으로 부터, 美國에서 李承晚 一派가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연합국 승인과 지원을 받기 위해 獨立운동중이라는 說明을 듣고, 美國의 經濟力·美英연합국의 힘으로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日蘇開戰의 경우 志願兵 문제, 食糧 문제, 義勇軍 문제, 創氏 문제 등도 의논하였다. 또한, 경찰유치중에도 조선독립 완성을 풍자하여 시국에 관한 造言飛語를 하였다. 許憲의 行爲는 陸軍刑法 99條, 海軍刑法 100條, 조선임시保安令 20條, 保安法 7조 해당으로 起訴엄벌이 必要하다고 하여 1943년 8월 27일에 檢事국에 送致하였다.
- 1943년 3월 30일 許憲은 軍事에 關한 造言으로 檢거되었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동일 李殷相의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6월 14일에 趙舜昌·李二德의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7월 7일 李二德 2회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具英昌은 7월 31일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 許憲의 3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26일, 4회는 8월 3일에 실시되었다. 文錫俊의 증인 신문조사는 8월 17일에 있었고, 許憲의 5회 신문조사는 8월 20일, 6회 조사는 8월 24일, 7회 조사는 8월 25일에 실시되었다. 洪翼範의 증인 신문조사는 8월 26일에 실시되었다.
- 1931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은 선고가 있었다: 許憲·李灌鎔·洪命熹는 各 懲役 1년 6월에 處한다. 李源赫·趙柄玉·金東駿은 各 懲役 1년 4월에 처한다. 全員 未決 구류중 200일을 本형 에 산입한다. 罪名은 1933년 制令7號 위반이다.
- 許憲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明治大學 法科 2년을 수학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東亞日報 등 2~3개 會社의 重役을 兼한 바 있고, 歐美를 시찰하였다. 李灌鎔은 東京府立四中 中退 후 귀국하여 法學校를 졸업한 후 유럽에 가서 취리히大 心理學科, 伯林大·예나大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였다. 현대평론사를 경영하였다. 洪命熹는 東京 大成中을 졸업한 후 中國 南洋 등지를 流浪한 후 東亞日報 記者, 時代日報 편집국장, 延禧전문 교사, 五山고등보통학교장을 지냈다.

- 이들은 京城에 本部를 두고 數萬의 會員을 갖는 新幹會에 所屬하여, 許憲은 中央執行委員長, 기타는 中央執行委員으로 活動하였다. 新幹會는 1927년 2월 25일 李灌鎔·洪命憲 등이 發起하여 組織되었다. 社會主義者를 會員으로 하면서 光州학생사건 발생시 현지조사를 하는 등 活動하였으며, 1929년 12월 10일 許憲 사무소에서 權東鎭·宋鎭禹·安在鴻·李時穆 등과 會同하여 光州사건 관련 관헌의 조치를 규탄하기 위한 연설회의 광고 격문을 인쇄·살포하였으며, 강연회를 개최하여 청중과 함께 시위를 시도하였다. 연사는 趙炳玉이 찾기로 하여 韓龍雲·朱耀翰 으로 하고, 許憲은 費用 50圓을 供與하였다. 檄文은 各 新幹會支會에 配布되었다. 民衆大會 개최, 시위운동, 민족여론 환기, 光州사건 폭로, 구금학생 석방, 경찰의 학교유린 배격, 경찰정치 항쟁 등 결의문 작성과 선전에 주력하였으며,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활동을 하여 治安을 妨害하였다. 各者 행위의 증거가 충분하여 光武 11년 7월 法律 제2호, 保安法 7조 및 朝鮮刑事令 42조에 의하여 1931년 4월 24일 主文과 같이 判決하였다.
-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43년 9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許憲 1회 신문조사는 9월 8일, 2회는 9월 13일에 실시되었다. 洪翼範의 증인 신문조사는 9월 14일, 韓永煜 14일, 鹽浦博은 15일, 李二德은 9월 16일, 文錫俊은 9월 17일에 실시되었다.
- 1943년 9월 18일 許憲의 公判請求가 있었다. 金龍巖·金用茂의 辯護士 선임이 있었고, 判事의 1회 公判調査가 1943년 10월 18일에 시작되었으나,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10월 25일 10시로 변경되었다. 許憲은 陸軍刑法 위반, 海軍刑法 위반 및 朝鮮臨時保安法 違反으로 기소되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判事는 辯論를 終結하고 11월 1일 判決을 宣告한다고 하고 駁정하였다. 11월 1일 2회 公判이 있었으며, 主文 낭독과 懲役 1年刑의 宣告가 있었으며, 同日로 上訴權拋棄로 刑이 確定되었다.